

##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2. 6.

산업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. 1. 23.

나. 제출자: 칠곡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4. 1. 26.

라. 상정일자: 제2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(2024. 2. 1. 상정·심사)

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(2024. 2. 6. 상정·심사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출설명자: 안전관리과장 김사역)

#### 가. 제안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1) 조례 제정의 목적,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
2)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 변경 제한
-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병행추진시 가능함을 명시

- 3)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4)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  - 표지판 설치요령(색상, 규격, 재질, 장소 등) 명시(별표 1)
  - 침수위험지구: 행위제한 지역 및 침수위 높이 표시
  - 붕괴위험지구: 행위제한 지역 및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 표시
- 5)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2조)
  - 침수위험지구, 유실위험지구, 고립위험지구, 취약방재시설지구, 붕괴위험지구, 상습가뭄재해지구의 각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의 예외사항 명시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일영)

#### ○ 「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,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,
- 검토 결과, 상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[원안가결](#)